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포럼 결과 보고

1 포럼 개요

- 주 제 : 좋은 돌봄, 요양보호사의 돌봄에서 시작!
- 일 시 : 2020. 2. 17(월) 14:00~16:00
-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1층)
- 주 최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강원도의회 젠더 연구회·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강원여성
- 참가자 : 54명(유관기관단체 22, 공무원 32 / 여36, 남18)
- 주요내용 : 노인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2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내용 |
|-------|-------------|---|
| 등록 | 13:30~14:00 | 등록 |
| 개회 | 14:00~14:10 |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김경식(강원도의회 의원)</p> <p>개회사 윤지영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 회장) 환영사 최경순 (고령사회를 이롭게하는 강원여성 회장) 축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p> |
| 발제 | 14:10~14:50 | <p style="text-align: right;">좌장 : 권현정(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강원도 노인돌봄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개선과제 - 허목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p> <p>돌봄종사자에게 돌봄을, 서울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사례 -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p> |
| 휴식 | 14:50~15:00 | 기념촬영 등 |
| 지정 토론 | 15:00~15:40 | -박현숙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이윤재옥 (효나누미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윤채옥 (춘천시의회 의원) -김유진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 담당) |
| 종합토론 | 15:40~16:00 | 질의 응답 및 토론 |
| 폐회 | 16:00~ | 폐회 |

《토 론》

박현숙(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 현장에서 재가지원사업,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
- 강원도 내 13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돌봄영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됨. 요양보호사의 돌봄사업은 여러 영역에서 사업이 진행중인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은 어르신들의 권익보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고민해야할 과제임.
- 향후 초고령화사회에서 돌봄은 현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 돌봄을 받는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021년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처우개선 방안이 있으나 기관이 중요함.
- 장기요양센터는 수가가 정해져있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비용을 쓸 여력이 없음.
- 또한 기관이 안정되고 요양보호사의 월급제가 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상 생계형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의 교육 등에 참여하기 어려움.
- 개선사항으로 첫째 돌봄을 위한 활동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개발해야함. 현재는 급여제공 매뉴얼이 통으로 되어있으며, 요양보호사를 위한 매뉴얼은 없음. 둘째 서비스 전 보호자와 이용자의 교육도 필수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을의 입장에서 많은 매뉴얼을 강조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보호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움. 셋째, 요양보호사를 위한 건강지원서비스 등이 필요함.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환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할 필요 있음.
- 돌봄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안정된 기관이 있어야 이용자, 가족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음. 따라서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윤재옥(호나누미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 8년전부터 요양보호사일을 시작하였음. 처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에는 10년 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노동시장에 진입함.
- 요양보호사 개인은 센터와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 먼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는 성희롱임.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해도 기관 차원에서 조치는 없으며, 요양보호사 개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음. 특히 기관은 다른 기관과 경쟁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 어르신이 다른 기관으로 갈까봐 성희롱이 발생해도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임. 특히 이용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과 변함 없음. 이용자는 요양보호사를 단순 가정부, 청소부 고된 일 등으로 전문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음.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분비물을 치우기, 간장만들기 등 업무 외 일도 하게 될 수 밖에 없음.
- 재가요양보호사가기 때문에 어르신이 거주하는 환경이 열악하면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 환경도 열악함.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함.
- 치매환자의 경우 교육을 받고 있으나,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요양보호사도 있음. 이는 교육과정과 교육제공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함.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은 월례회의 1회인데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있는 경우가 있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윤채옥(춘천시의회 의원)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중임. 춘천시는 2020년 2월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음. 전부터 조례재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했으나, 공단,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춘천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 3조와 4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

의 책무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5조와 6조에서는 실태개선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두었음. 9조와 10조에서는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당 포럼에서는 센터설립이 가장 중요한 안건인 것 같은데, 현재 춘천시에서는 다양한 센터설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의 인식과 홍보가 떨어짐(?)

● 요양보호사가 6,000명 정도 있는데, 센터사업비가 5억으로 계획됨.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센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실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짐. 만약 도에서 먼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춘천시에 거점센터로 설치되면 바람직한 방향일 듯. 1차 계획은 요양보호사 독감, 건강검진 지원을 포함하였음.

● 요양보호사 교육제공, 여가 등은 시의 의지는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은 없음.

● 요양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수당을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은 없음. 수당지급을 위해 중앙정부의 법규, 지침 등이 필요함.

● 최근 전국요양보호사 노조에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돌봄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함.

김유진(강원도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담당)

● 2019년 장기요양기관 권익보호 관련 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하였음. 기존의 처우개선 관련 논의가 복지수당에 집중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연구원에 제안하였음.

● 883개 강원도내 기관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164개소, 장기요양기관 365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의 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 발급 5만2천명 중 25%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용자 측면에서 노인인구가 30만명중.. 34%가 시설, 66%가 재가 거주

중에 있음. 서비스 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로 결정된다고 생각함.

● 공급측면에서는 883개소 중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 미만 퇴직자가 약 70% 정도로 파악됨.

● 임금은 최저임금의 105% 정도되는데 시설 가이드라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님. 그러나 문제는 호봉제가 아니고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유사경력과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보공단의 인건비 지급 비율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 요양보호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처우개선 논의는 수당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 도의 입장은 전달체계가 가장 중여하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전달체계에서 종사자에게 무엇인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서비스 질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개인운영시설 까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긴함.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수당지급이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에 한정됨.

●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수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유도정책이 필요함(?).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작년에는 지급이 되었으나 올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연구에서 주요정책과제로 발굴된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특히 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시 가족지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중임. 또한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는 계속해서 고민중에 있음. 또한 근골격계 외상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됨.

권현정(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내용을 종합하자면 1. 수가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해야 하는 문제임. 이 문제를 지방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2.

복지수당은 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듯. 3. 교육에 대한 부분,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의 논의도 필요할 듯 함.

- 도내는 공급대비 수요가 많아서 타 시도보다 인건비가 높음
- 강원도의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낮고, 재직기간이 타시도보다 길음.
- 이직률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건보에서 오픈하지 않으나,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좋은 것으로 예측됨.
- 자격증의 경우 실제 발급비율 대비 실제 근로비율이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높음.

허목화(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복지수당에 대해 얘기가 나왔지만 복지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음. 복지수당의 비용을 센터설립이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춘천시의 사례처럼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도 큰 예산 투입이 아니더라도 효과가 볼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됨.
-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일자리, 역량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며 종사자지원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됨.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470개소에서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에서 월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교육, 역량강화, 건강지원, 노동권 보호 관련된 책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울시도 서울시시립센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

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민간까지 수당을 지급한다면, 예산 비용이 막대하게 커지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음. 수당을 지급하면 좋으나 정책효과는 없고, 예산 부담이 크다고 생각됨.

● 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종사자 지원센터 등을 먼저 설립 후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을 듯.

● 보호자 교육 관련 서울시에서는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중에 있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외에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좋은돌봄을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됨.

● 강원도 지역적 특성의 경우 원거리를 자주 다니며,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함. 이는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 강원도에 돌봄과 관련된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지자체의 조례는 필요함. 기초 뿐만 아니라 광역 조례도 반드시 필요함.

《청중질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강원지부장(행복이가득한요양원)

● 강원도에서는 복지종사자 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잘 지급되고 있고, 종사자 이직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타 시도에서는 수당지급에 대한 기관 평가등급별 제한을 두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평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됨.

● 60세 이상 복지수당 지급을 해오다 지급이 중단되서 아쉬움이 많고 고려해볼 상황이라 생각함.

윤지영(강원도의회 의원)

● 서울시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음.

● 연구관련 면접대상의 경력, 성별 등 정책에 대해서 인식하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좋을 듯.

● 복지수당 관련 타 시도에서는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도에서는 다른 수당을 많은 종류가 있으며 예산 비중도 상당부분도 차지하고 있는데, 수당에 대한 부분은 효과성 파악이 어려우나, 강원도는 서비스, 수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논의 조차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음.

● 2017년 강원도 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입법되어있음. 그러나 예산문제로 센터설립이 안되었음. 다른 돌봄분야인 보육지원센터 등은 설립되어 있는데 노인돌봄관련된 센터는 없는 실정임.

김유진(강원도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담당)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던 수당은 2017년 별도로 재가시설 포함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확보 후 수당을 지급하였음. 때문에 전체사회복지시설 예산은 2017년 약 60억 정도에서 올해는 90억 정도 책정됨.

● 수당의 경우 복지부에서.....